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검 토 보 고

I. 주요내용

- 업무 전문성과 업무 환경, 협업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각 보건의료인력¹⁾의 구체적인 범위를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를 둠(안 제26조의2제1항 신설).
- 위원은 보건의료인력을 대표하는 단체나 의료기관단체가 추천하는 인장을 포함하여 50명 이상 10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함(안 제26조의2제3항 및 4항 신설).
- 위원은 보건의료인력을 대표하는 단체나 의료기관단체가 추천하는 인원 20명 이상, 대통령령에 따른 노동자단체, 시민단체, 소비자단체 추천 인원,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10명 이상, 보건의료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10명 이상으로 구성함(안 제26조의2제5항 신설).
- 업무조정위원회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업무 지원을 위한 사무국을 둠(안 제26조의2제7항 및 9항 신설).

1)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보건의료인력"이란 다음 각 목의 면허·자격 등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가.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간호조무사

나. 「약사법」에 따른 약사 및 한약사

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및 안경사

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구조사

마.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른 영양사 등 보건의료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자격 등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II. 검토의견

- 개정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이며, 자세한 수정사항은 주서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II. 관계기관 의견

- **행정안전부**는 위원회를 신설하기보다는 현행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따른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의 분과·전문위원회 형태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신설 시에도 최소한의 존속기한을 명시할 필요가 있으며,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²⁾에 따라 자문위원회는 원칙적으로 사무기구를 둘 수 없으므로 부득이 사무국 운영이 필요하다더라도 대통령령(직제)에 근거를 두고 운영함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대한의사협회**는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의 신설이 기존 개별 법상의 의료인·약사 등 각 직역의 자격 및 업무범위 규정을 무시하고 법체계의 정합성을 해치며, 비전문가 중심의 위원회 구성으로 의료 현장의 효율적 역할 분담과 전문적 의사결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반대하는 입장이며, 의료인력 정책은 전문가의 과학적 근거에 따른 중장기 계획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전문위원 이 은 정)

2)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위원회의 사무기구 등) ② 자문위원회등에는 사무기구를 설치하거나 상근(常勤)인 전문위원 등의 직원을 둘 수 없다. 다만, 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사무 지원을 하기 곤란한 위원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